

|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16937    |
| 의 퇴 인  | 전종덕의원      |
| 회 답 일  | 2026.6.17. |
| 추 계 번호 | 26D0961    |

#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국민투표 시 재외투표와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경우, 2027년에 국민투표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추가 재정소요는 976억 8,3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| 2027  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 계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
| 재외국민투표 실시(안 제2조)  | 12,336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12,336 |
| 사전투표 실시(안 제51조의2) | 85,347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85,347 |
| 합계                | 97,683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97,683 |

주: 본 추계는 2027년에 국민투표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투표실시 여부 또는 실시 횟수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2조(투표인의 정의)             | “투표인”이란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의미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7조(투표권)                 | 18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음<br>※ 현행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이 투표권이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3  | 안 제26조(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)    |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기간 조항을 삭제함<br>※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4  | 안 제51조의2(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) | -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·면·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함<br>-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「공직선거법」의 사전투표소 및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읍·면·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1) 「공직선거법」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5 | 안 제91조의2<br>~안 제91조의3(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 등) | -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공고일 후 10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함<br>-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「공직선거법」 제14장의2 <sup>1)</sup> 를 준용함 | 의무규정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2조(투표인의 정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| 추가재정소요는 재외국민투표 실시에 따른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7조(투표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| 일반적으로 투표용지 인쇄는 실제 투표율보다 5~10% 많게 이루어져, 추가된 18세 선거권자 <sup>2)</sup> 를 위한 투표용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안 제26조(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)                    | -    |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, 국민투표 운동과 관련하여 공정국민투표지원단 인건비, 국민투표법 위반사례 안내자료 제작 등의 경비가 소요되며, 운동 기간 제한 규정 삭제 시 관련 비용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|
| 4  | 안 제51조의2(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)                 | O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안 제91조의2<br>~안 제91조의3(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 등) | X    |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구성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존 인력 활용 여부,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2)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결과에 따르면, 2025년 기준 19세 이상인 국민투표 선거권자 수는 44,602,590명이고 18세 인구는 456,675명으로 1% 증가하여 투표용지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1987년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이후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았고 향후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우나, 추계에서는 2027년에 국민투표가 1회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<sup>3)</sup>

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민투표 시 재외투표와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
- 재외국민투표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23억 3,600만원으로 예상
  - 개정안 제91조의3에서는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「공직선거법」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재외국민투표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 예산을 활용
  -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,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 예산으로 118억 2,200만원 편성
  -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7년 기준 123억 3,600만원으로 예상
- 사전투표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853억 4,700만원으로 예상
  - 개정안 제51조의2에서는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「공직선거법」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사전투표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6월 3일 실

3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6.3)

| 구분            | 2024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소비자물가상승률(CPI) | 2.3% | 2.1% | 2.3% | 2.0% | 2.0% |

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예산을 활용

- 현행 「공직선거법」 상 읍·면·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<sup>4)</sup>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,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예산은 817억 9,200만원 편성
-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7년 기준 853억 4,700만원으로 예상됨

□ 추계결과, 2027년에 국민투표를 1회 실시한다는 가정 하에 재외국민투표와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976억 8,300만원으로 추계

[표 2] 2027년 국민투표 가정 시 추가재정소요 추정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| 2027   |
|-----------|--------|
| 재외국민투표 실시 | 12,336 |
| 사전투표 실시   | 85,347 |
| 합계        | 97,683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□ 본 추계는 2027년에 국민투표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투표실시 여부 또는 실시 횟수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4) 제148조(사전투표소의 설치) 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(이하 "사전투표기간"이라 한다) 관할구역(선거구가 해당 구·시·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)의 읍·면·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읍·면·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
2. 읍·면·동이 설치·폐지·분할·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·면·동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
3. 읍·면·동 관할구역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
4. 천재지변 또는 전쟁·폭동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
②~⑥ (생략)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전상욱 | 김안나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|
| 전상욱 | 02-6788-4673 | flyhigh@assembly.go.kr |